

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규격서

스크류식(2M 이하형)

제작규격서

1. 적용

가. 본 규격서는 장애인용 수직형리프트 제작, 설치에 적용한다.

나. 물품구입 설치 기준

- 1)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(보건복지부 제정)
- 2) 건축법 시행규칙 (건교부 제정)
- 3)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, 전기 내선 규정 (통상산업부 제정)
- 4)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(건교부 제정)
- 5) 한국 공업 규격 (KSP 6130)
- 6) 승강기 검사 기준(산업자원부)

2. 납품내역

가. 수량 및 설치장소

- 1) 수량 : 1 대
- 2) 설치장소 : 지정장소

나. 규격 및 제원

- 1) 구동방식 : 스크류 직접구동 방식
- 2) 정격속도 : 2.08m/min.
- 3) 사용중량 : 270kg
- 4) 도장 : 랙카, 카, 도어, 승강로외벽 도색 도장
- 5) 전원 : AC 380V, 60Hz, 삼상, 15Amp
- 6) CAGE DIM. : 900(W) x 1400(L) x 1100(H)
- 7) 승강길이 : 1.3m

다. 규격 및 제원 기준

- 1) 정격 속도(m/min) : 사용중량 270kg 적재시의 분당속도
- 2) 사용 중량(kg) : 승강기 자체무게를 포함하지 않는 실사용 중량
- 3) 승강 거리(m) : 휠체어리프트가 운행하는 구간의 행정거리

3. 구조 및 세부규격

가. 일반구조

- 1) 각 리프트는 상부 및 하부 2개소의 승강장을 갖는 구조로 한다.
- 2) 상, 하부 적당한 곳에 이용자 운전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운전방식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3) 리프트를 보관시 관계자 외에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승강기 잠금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.
- 4) 옥외형 리프트는 날씨와 습도등에 부식되지 않도록 방수, 방식등 제반조치를 강구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.

나. 본 리프트는 다음과 같이 주요구성부로 이루어진다.

- 1) 마스트(Mast)
- 2) 승강기
- 3) 도어(Door)
- 4) 운전반
- 5) 각종안전장치

다. 세부구조

- 1) 마스트(Mast)
승강기와 가이드레일, 승강카를 지지하고, 모터 및 스크류 너트와 콘트롤러를 내장한다.
 - 가) 모 터 : AC 380V, 1.5kW(2.0Hp).
 - 나) 스 크 류 : 외경 Ø45
 - 다) 너 트 : 주너트 및 보조너트 : 주너트는 승강카를 운행시키는 역할을 하며, 보조너트는 주너트 손상시 승강카의 추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. 주너트가 손상되기 전 일정 정도를 마모할 경우 리프트 운행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 - 다) 콘트롤러 : 승강기, 조작반 및 경보장치등 리프트의 전반적인 동작상태를 제어한다.
 - 라) 가이드레일 : KS규격에 준한 레일을 적용하고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위하여 8K 엘리베이터 레일을 적용한다.
- 2) 승강기
 - 가) 승강기 판넬은 1.6t 사각파이프와 1.2t 철판을 적용하고 볼트조립 구조로 한다.
 - 나) 바닥판은 미끄럼방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
 - 다) 본체는 270kg이상의 하중에도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.
 - 라) 하부승강장쪽 출입구에 자동잠금장치를 구비한 안전바를 설치해야 하며, 안전바가 잠금해지시 운행을 정지시켜야 한다.

3) 승강장 도어(Door)

- 가) 도어의 구동은 수동 여닫힘 구조로 하여야하며, 도어프레임은 50*50*1.2t Mild Steel 구조로 한다.
- 나) 도어 프레임 및 도어의 마감은 미려한 외형 및 내구성을 위하여 도색 도장으로 한다.
- 다) 도어에는 자동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, 잠금해지시 리프트 운행을 정지시켜야 한다.

4) 운전반

각 승강장에 설치되며 키 스위치와 상/하 운전스위치, 비상정지장치로 구성되며 호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

5) 각종 안전 장치

본 리프트는 이용자의 안전 및 리프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.

- 가) 추락방지 안전장치 : 주너트 손상시 전기적, 기계적으로 승강기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
- 다) 도어 인터록 : 도어 클로즈을 적용하여 평상시는 항상 도어 닫힘을 유지하고 리프트 사용시 솔레노이드 작동에 의하여 도어가 열리는 구조
- 라) 정전시 비상 조명 장치
- 마) 리프트 점검용 안전 스토퍼(전기적 S/W 내장형)
- 바) 상부 화이날리미트 스위치(전기적, 기계적장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.)
- 사) 비상시 카 하강을 방지하는 물리적 고정장치가 장착되어야 한다.

4. 설치

가. 공사범위

- 1) 본 공사는 휠체어리프트의 설치, 검사 시운전 일체를 포함한다.
- 2) 시스템 구성을 위한 배관 배선을 포함한다.
- 3) 리프트 설치를 위한 벽체 및 바닥 등의 구멍 뚫기 등 필요한 공사를 포함한다.
- 4) 계약자는 착공전, 해당 현장의 설치여건을 정밀 확인하여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나. 제외공사

- 1) 마스트바닥 또는 측면까지 1차측 전원 공급공사(380V 삼상, 60Hz)
단, 분전반 단독전원을 제공한다
- 2)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 및 접지선(일반기계접지 3종) 공사
단, 전원배관은 타배관과 별도배관으로 시공한다.
- 3) 휠체어리프트 설치후 벽체 및 계단 마감 보강 공사
(단, 200kgf/cm² 이상의 콘크리트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.)
- 4) 별도의 관리실과 장애인이 통화할 수 있는 인터폰의 배관 및 배선공사
단, 전원배관과 분리하여 시공한다.

5. 품질보증 및 무상보수

가. 품질보증(하자보증)

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리프트의 보증기간은 하자보증이행증권 발행 후 3년(36개월)간 보증한다. 이 기간내에 발생한 설계, 제작, 설치 및 자재불량 등에 기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며, 무상으로 수리,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.

나. 발주자 또는 건물주측에서는 사용검사를 득한 후 바로 유지보수 회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다. 계약자는 하자 기간 완료 후에도 기기의 운영실태와 부속품의 수명을 고려하여 소요부속품을 항상 적정 수준으로 보유하고, 요구시 즉각 공급하여야 한다.